

인천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2가단2684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, 전수려

피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율

담당변호사 김홍일

변론 종결 2023. 7. 12.

판결 선고 2023. 8. 9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87,163,513원 및 그중 86,746,308원에 대하여 2022. 9. 20.부터 2022. 10. 29.까지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2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. 3. 16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1,626,992원을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,626,992원으로 각 경정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

- 1) 원고는 2019. 1. 15. 피고 A와 사이에, 신용보증원금을 90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을 2019. 1. 15.부터 2020. 1. 14.까지, 채권자를 소외 중소기업은행(이하 '소외 은행'이라 한다)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- 2) 피고 A는 2019. 1. 16.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- 3) 이후 보증기한을 2021. 1. 14.까지, 2021. 1. 5. 보증원금을 85,500,000원으로 각 변경한 다음, 보증기한을 2022. 1. 14.까지, 2022. 1. 13. 보증기한을 2023. 1. 13.까지로 다시 각 변경하였다.

나.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

- 1) 피고 A는 2022. 6. 9.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2. 9. 20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은행에 대하여 86,746,308원(= 원금 85,500,000원 + 이자 1,246,308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- 2)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818,850원이고, 송달료환급금 등으로 401,645원을 위 금원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며,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%이다.

다.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

피고 A는 2022. 4. 27.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

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 한다),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2,000,000원, 채무자를 피고 A,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3351호, 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등

1) 이후 소외 주식회사 D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22. 6. 14.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,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에서 2023. 2. 10.경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.

2) 이후 2023. 3. 16.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 한다)가 작성되었고,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1,626,9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.

근로복지공단	임금채권자(최우선임금)	10,000,000
인천광역시 부평구	교부권자(당해세)	191,400
E 주식회사	근저당권자	99,314,503
인천세무서	교부권자(조세)	10,750,410
주식회사 D	신청채권자(근저당)	35,278,438
피고 B	근저당권자	31,626,992
인천광역시 부평구	교부권자(압류선착)	298,360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잔액 합계 87,163,513원[= 대위변제금 86,746,308원 + 대지급금 잔액 417,205원(= 818,850원 - 401,645원)] 및 그중 대위변제금 86,746,3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. 9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

2022. 10. 29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여기서 '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'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변화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,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,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2. 6. 9.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,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. 4. 27. 당시에는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,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이상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3186 판결,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등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, 피고 A와는 거래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 A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, 피고 A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추가적인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의 악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판단 가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나아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.

나) 살피건대,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고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 A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

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피고 B 역시 피고 A로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,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1)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,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,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).

2)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,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,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1,626,992원은 삭제하고,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주문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고범진

별지